

공고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보경 1436 16430	(전화번호 217.)	전결규정 조 호	국 상 전계사항
처리기한		기안자	결재자	
시행일자	1969.10.23	보경과 김홍현	보경 사회국장	홍현
보존년한		기안일자	결재자	홍현
		69. 10.		
보조기	보경 과장	[Seal]		
	위영 계장			
화기	보경 과장	회계 과장	보경 과장	보경 과장
조	회계 과장	회계 과장	사회 과장	사회 과장
경수관	유신 조	기안 장소	1969. 10. 23	공화법무 서인무 10월27일 부
제목	69년도 제1회 조역 추경신청 결의.			
제 1 안 (제 1 회 조역)				
1. 당시 시행 69년도 제1회 조역 추경신청을 조역사에 관한 칙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 계획서의 관이 결의 하고자 함.				
2. 이에 소의된 예산(내역 내역) 집행은 공과부 예산과 공과부 예산 산출하여, 집행하여, 공과부 예산 추경 신청에 의하여 집행하여, 결의. 결부 69년도 제1회 조역 추경신청 결의 계획서.				
제 2 안				
수. 신. 상. 용. 편. 결. 함.				

제 목 등 기

1. 당시 시행 69년도 제1회 조세사 자격시험을 별첨 응고문과 같이 실시하려 함에 귀교를 도와달라 고기시험의 시험장 으로 사용하려 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응 고 문 1 부

제 1 단

수 신 수석리 관소.

참 소 보건 카장 (위생 카장)

제 목 다음 후별시 시행 69년도 제1회 조세사 자격시험 실시.

1. 당시 시행 69년도 제1회 조세사 자격 시험을 별첨 응고문 과 같이 실시 하오기. 귀교에 널리 알려 달라. 다수 응시하도록 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응 고 문 1 부

수 신 리 1. 보건 사회부 장관.

2. 가 2 ~ 11

3. 대한 덕업 협회 중앙회장 및 부회장

4. 대한 수백업 협회 중앙회장 및 부회장

5. 중화 덕업 협회 장 및 지부장

6. 김 재 우 총합 고등 기술 학교장

7. 다음 고등 기술 학교장

제 2 단

수 신 수석리 관소.

참 소 위생 카장

제 목 등 기

1. 당시 시행 69년도 제1회 조세사 자격 시험을 별첨 응고문과 같이 실시하려 함에 귀교를 도와달라 고기시험의 시험장 으로 사용하려 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리사를 위하여 할 일 중에서 조리사도 없이 동시행해도. 응 하지
않고 사례가 없도록 수석담당자를 각급 노력할 것.

관 부. 임근부
수신리 대사 22~30.

개 5안
수신 임보 실 광.
발신 보진 과 광.
개 부 동 전

당시 시행 69년도 제1회 조리사 자격시험을. 별첨 공
고와 같이 실시 하오며 각 후보기관에 널리 알려 동시행에 다수 응
모기 위하여 하대 부에게 아람까지
관 부. 임근부 부

다음 후반기 시험 69.년도 2월 1차 조차 자택시험 실시 예정다.
 조차 시험은 현재 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 시험 69.년도 2월 1차
 조차 자택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 예정함.

1. 시험 실시 일차.

- 가. 학과 시험 1969 11 16 (월요일) (보간)
- 나. 실기 시험 1969 11 27~30 (4일간)

2. 시험 장소 : 사개 중구 중우로 3가 50. 다음 편 학교

- 가. 학과 시험
- 나. 실기 시험

3. 시험 과목

- 가. 학과 시험
 - 1) 추성철학
 - 2) 공중 위생학
 - 3) 영양학
 - 4) 식품학
 - 5) 식품 위생학
- 나. 실기 시험
 - 1) 한식 부분
 - 2) 양식 부분
 - 3) 중식 부분
 - 4) 일본식 부분

} 상기 «분야중 선택한 1분야.

4. 응시 자격

가. 추천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
 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 1) 기숙사, 학교, 병원에 기타 투숙기관등의 급식
 시설에 종사하여 음식물의 조리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있다. 1 기와량이 증명 가능하다.

음식을 제공한 사항. 2) 음식원 영영중, 월을 통한 일 당 100 의복 이상의
음식을 제공한 사항. 또한 3월 20일, 카바레 또는 바에서 음식물의
소리 영영에 3번 이상 중대한 사안이 있으나 그 사안의 상이 증명 가능

5. 음식 원과.

가. 음식 원과 원수기간 09. 10. 20 ~ 11. 13. (17일간)

나. 음식 원과 원수장소.

1) 나트륨류 보인 사파주 보리카.

다. 재물 서류.

1) 음식 원과 (소형 음식) 1 부 및 보리카 1 부.

2) 소리 영영 중대 증명 (음식 원과 이면)

3) 사 권 (3. 4 권의 월보 상환식) 3매.

4) 수수료 (나트륨류 수입 증명) 200 원.

라. 음식 원과와 관련된 다른 ~~사항~~ 사항

1) 조차 사적사건 음식 원과는 관련 사안이 있는 것에 비추어

2) 조차 조차 또는 주의 등록 또는 ~~사항~~ 사항

~~사항~~ 의관서류 조차 방안에 대해 재물 서류에서 정략하고 동시권 정략과
재물 조차 조차 관련 사항과 관련된 조차 등록 한다.

나. 기록 서류.

1) 학과 시험 ~ 불면 또는 아녀의 (정액 음식)

2) 조차 시험 ~ 조차 위생부 위생부 영수 수수료.

바. 수권 서류.

1) 시험 영영 08:00 부터 시험장까지 '음식 원과' ~~사항~~ ~~사항~~

~~사항~~ 수권 서류 ~~사항~~ ~~사항~~ 원과에 조차의 시험과 보임을 조차의 시험장에
기강의 하위에 조차 등록 하며 수권 서류 하위 영영에 부속하고 수권 등록
한다.

다. 학과 시험

1) 학과 시험은 시험 시작 5분 전을 1교시에 30분 2교시에 20분을 전하여 실시하되 오차당 배정 ~~시간~~ (시간)은 전액으로 한다.
09:00 (제1교시) 시와 11:30 (제2교시)에 늦은 수험생은 수험을 불허한다.

아. 실기 시험

1) 실기 시험은 분야별 수석직으로 실시하되 오차당 배정 (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09:00부터 실시한다.

가. 합격과 불합

1) 합격과 불합은 시험 후장에 제시 불합한다.
2) 학과시험 합격자에 전하여 실기 시험을 수험할수 있으며 실기 시험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로 본다.

나. 합격증 교부

1) 최종 합격자는 등시된 합격증에 합격과 영부를 작성한후 합격증을 교부한다

6. 시험 위원회 구성

가. 평칭

다음 후반기 승진사 자격시험 위원회라 한다.

나. 임원

- 1) 위원장 1인
- 2) 부위원장 1인
- 3) 간사 1인
- 4) 학과 시험 위원 차등별 2인
- 5) 실기 시험 위원 분야별 2인
- 6) 서기 1인
- 7) 총무와 수험 담당 2인

다. 구 상

-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보건 사회 위원으로 한다.
- 2) 부 위원장은 보건 위원으로 한다.
- 3) 학사 위원장은 위원으로 한다.
- 4) 학과 시정 위원(학부별)은 보건 사회 위원과 중대

위원으로 한다.

- 5) 소위 시정 위원도 아래와 중대 위원으로 한다.
 - 가) 각 영양사 양성학교 영양사 교수
 - 나) 각 8리 학원장
 - 다) 조려사 양성 학교장
 - 라) 조려사 중대 학식과 경험의 풍부한 자.
- 6) 소위 보건 위원장은 위생학 위원으로 한다.

라. 직 위

1) 본 위원회 위원장은 시정 시정위원 시정위원의 직위를 겸한다.

- 2) 부 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학과 및 소위 시정위원의 직위를 겸한다.
- 3) 학과 시정위원은 다른 소위 중대 및 시정위원의 직위를 겸한다.

- 4) 학과 시정 위원은 해당 과목의 중대 위원으로 한다.
- 5) 소위 시정 위원은 담당 분야의 중대 및 중대의 직위를 겸한다.
- 6) 소위 시정 위원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 7) 시정 위원으로 시정위원의 직위 위와 시정위원의 사무 및 수첩과 부속 서류의 직위 및 직장의 직위를 겸한다.

나. 시정 위원 위촉



- 1) 학과 시정위원회는 ~~각 시정위원회~~ 별과 인사의 변경에 의해서
- 2) 기타 의제 안은 위촉장을 상의한다

따. 시정 조례 방법.

1) 위촉 받은 학과 시정 위원은 상당부분이 다른 시정 조례 50조제를 조례 하의 조례상 2분 이내가 개정할 수 있는 시정령으로 조례하에 별첨은 국외학교 졸업과 임도에 임하는 조례로 한다.

2) 위촉 받은 시정 시정 위원은 상당부분이 다른 시정 조례 50조제를 조례 하의. 조례상 20~30분 55외에. 시정 제정으로. 100원임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별첨은 시정에 3년임도. 총서한 사. 학과 및 별첨에 사. 재 선.

1) 별과 시정은 조례한 20 조제의 배임을 각 5원임 하의 100원 임으로 하고. 앞은 앞의 재사하의 조례상의 임으로 되어 한다.

2) 시정 시정은 위임 카 재를 앞 배임으로 구분하여 재임 하의. 배임은 100원 임으로 하고 시정 위원은 2인임으로 600원을 안함 으로 한다.

아. 시정 함의 기준.

1) 학과 시정

가) 학과 시정 5카부의 총임은 500원 안함으로. 60원 기준의 총임은 300원을 득하면 함의임으로 하고. 300원 이하면 불함 임으로 한다.

가) 총임이 300원 이상이라도. 카부별 임원에 40원 이하면 카부이 1카부이라도 있을 경우는 과제로 불함임이 된다

2) 시정 시정

가) 시정 시정 위원 2인의 재임. 총임 600원임 으로. 60원 기준의 총임은 360원을 득하면 함의임으로 하고. 360원

이안을 불합격으로 한다.

7. 응고 방법

가. 원관 식은 1개씩 1회 응고한다.

나. 응고한 별칭

8. 대안 대응액

가. 응고후 응사 총수에 의거 산출한다.

(응사 총수, 응사 수수료) - (응사총 합격자 면허 수수료) 대안액

9. SB 예산

가. 응사 총수에 의거 SB 예산을 산출 하 한다.

나. 자격시험 신청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신원 응고료 77900원

종 별	SB 금액	산출 근거	지출비목	지출 방법	단가
신원 응고료	27 000 원	3만 50명 x 180원 = 27000		항구예산외 지출	단가 180원 100원

다. 본 시험중 시험 신청용 재원 구입에 대하여는 SB예산 범위 내에서 전수자금을 집행한다.

* 예산외부 보기에 보인 항목이 위생하여 수수료의 범위

※ 신원응고료 예산 외계로 예산 1개씩만 응고 1회

위 추 장

심 영

귀하를 양 사랑 1969년도 제1회 조사
사적 사랑의 시회 위원장 위주함

1 단 단 추 추

1969

다음 특별 사랑

서울특별시 자곡교시공사업소
 소리에 관한 계획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969년 4월
 소리에 관한 자곡 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함이다.



1969. 10. 23
 서울 특별 시험

합
 1. 시험
 2. 시험
 3. 시험
 4. 시험
 5. 시험
 6. 시험
 7. 시험
 8. 시험
 9. 시험
 10. 시험

- 1. 시험 실시 일과 및 장소
 - 가. 학과 시험 : 1969. 11. 16. 08.00 (1일차)
 - 나. 실기 시험 : 1969. 11. 27~30까지 (4일차)
 (나. 실기 시험은 학과 시험 합격자에 한한다)
 - 다. 시험 장소 : 서울 연희대 (응구층으로 까 50)

- 2. 시험 과목
 - 가. 학과 시험 : 위생학, 공중위생학, 영양학, 식품학, 식품위생학
 - 나. 실기 시험 : 한식, 양식, 중국식, 일본식, 증식역한 외국음식

- 3. 응시 자격
 - 가. 국민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한다.

1) 7년이나 학교, 병원, 기타, 후방기관등의 급지 시설 또는 공공 기관에서 응시자의 소리에 대해 3년이상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2) 응시권 인정증 1월을 통한 일 평균 100명 이상의 응시를 제공한 차당 3회. 다만 3회명 가마래 또는 2배에서 응시자의 소리에 응시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고 그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자.

- 4. 응시 절차
 - 가. 응시 원서 접수 관할 접수 장소

- 1) 접수 기간 : 1969. 10. 28 ~ 11. 19. 까지 (47일간)
- 2) 접수 장소 : 서울 특별시 연희대 교내

4. 재물 서류

- 1) 응시 원서 (소경 서류) 1부 및 ~~합격권~~ 1부
- 2) 초라 영위 송사 증명 (응시원서 이면)
- 3) 사권 (3 & 4 대라 할로 상변신) 4 개.
- 4) 수수료 (사권 취득에 수입 증서) 200 원

나. 시험료

- 1) 학과 시험 : 불매 또는 과외 및 (필수 또는 선택)
- 2) 실기 시험 : 실기 위생복 위생복, 영위 수수료

5. 합격과 불합격 원시 및 방법.

- 가. 학과 시험. 1969. 11. 25. 15.00
- 나. 실기 시험. 1969. 12. 9. 15.00

6. 기타 사항.

가. 응시자: 시험 당일 0.8시 까지 시험장에 출석한다.
 시험 장외의 학위를 받고 응시료를 모두 받으면 시험장에 출석하여야 한다.

나. 기타 조의 사항은 양시 보의 75) 6647 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